

『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정금전신탁 계약서』 개정대비표

2022.1.1시행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1조 (생략)</p> <p>제2조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~ 4. (생략)</p> <p>5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2 천만원 X [1 + 가입 후 경과한 연수(경과한 연수가 4 년 이상인 경우에는 4 년으로 한다)] </div> <p>제3조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<u>3 천 5 백만원</u> 이하인 거주자(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)</p> <p>3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시행령에 따른 농어민(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<u>3 천 5 백만원</u>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)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4조 ~ 제29조 (생략)</p> <p>[별표1] (생략)</p> <p>[별표2] (생략)</p>	<p>제1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2 천만원 X [1 + 가입 후 경과한 연수(경과한 연수가 4 년 이상인 경우에는 4 년으로 한다)] - <u>누적납입금액</u> </div> <p>제3조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<u>3 천 8 백만원</u> 이하인 거주자(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)</p> <p>3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시행령에 따른 농어민(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<u>3 천 8 백만원</u>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 ~ 제29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1]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2] (현행과 같음)</p>	<p>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18 제3항제5호 계산식명확화</p> <p>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18 제2항제1호 나목, 다목 개정</p>